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아울시스템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PrivacyDB)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0,240,000원, VAT 별도)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3일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아울시스템즈 (인)

